

[] 다단계판매업 [] 휴업
 [] 후원방문판매업 [] 폐업
 [] 영업재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일	
신고인	상호			등록번호	
	소재지			전화번호	
	대표자의 성명				
(서명 또는 인)					
신고 항목	기간	부터		까지	
	휴업				
	폐업				
	영업재개				
	사유				
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·제29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([]휴업 []폐업 []영업재개)를 신고합니다.

①
②
③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※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 ·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(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) ※ 등록증을 분실·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[등록증 분실·훼손 사유]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처리절차

```

graph LR
    A[신고서 작성] --> B[접수]
    B --> C[검토]
    C --> D[처리]

```

신곡인

처리기관: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